

황보수정 선생님 「2016 공인노무사 객관식 테마 민법」【제2판】
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(201608-01)

p.38 42번 문제수정

기 존	042.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경의를 거치지 않고,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...
수 정	042.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,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...

p.97 109번 지문수정

기 존	① 행위무능력자는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.
수 정	① 제한능력자는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.

p.114 163번 문제수정

기 존	163. 금전채권 및 이사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수 정	163. 금전채권 및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p.222 248번 문제수정

기 존	248. 甲은 乙 로부터 차용한 5,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A토지(시가 6,000만원 상당)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, 丙은 甲의 乙에 대한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. 그 후 A토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되었는데, 甲이 무자력이 되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丁은 甲의 채무 5,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변제하였으며, 현재 A토지의 가액은 8,000만원이다. 이 경우 제3취득자 丁이 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?
수 정	248. 甲은 乙 로부터 차용한 5,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A토지(시가 6,000만원 상당)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, 丙은 甲의 乙에 대한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. 그 후 A토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되었는데, 甲이 무자력이 되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丁은 甲의 채무 5,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변제하였으며, 현재 A토지의 가액은 8,000만원이다. 이 경우 제3취득자 丁이 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?

p.238 266번 해설/정답 수정

기 존	<p>정답 ③</p> <p>① (○) 대판 2005.12.8, 2003다41463 ; 대판 2003.4.11, 2001다53059 등</p> <p>② (○)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하는데(제532조),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이라 한다.</p> <p>③ (✗)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(제534조).</p> <p>④ (○)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(청약)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(승낙)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,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(대판 2003.4.25, 2002다11458 등). 다만 위와 같은 명예퇴직합의 이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(대판 2002.8.23, 2000다60890 · 60906).</p> <p>⑤ (○) 민법 제528조</p>
--------	---

수 정	<p>정답 ④</p> <p>① (○) 대판 2005.12.8, 2003다41463 ; 대판 2003.4.11, 2001다53059 등</p> <p>② (○)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하는데(제532조),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이라 한다.</p> <p>③ (○)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(제534조).</p> <p>④ (✗)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(청약)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(승낙)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,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(대판 2003.4.25, 2002다11458 등). 다만 위와 같은 명예퇴직합의 이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(대판 2002.8.23, 2000다60890 · 60906).</p> <p>⑤ (○) 민법 제528조</p>
--------	---

p.239 267번 지문수정

기 존	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총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.
수 정	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.

p.267 294번 지문/해설/정답 수정

기 존	<p>294. 해제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 <노무사 2008></p> <p>① 매매계약체결 후 목적물의 가격이 급등하여 약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게 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</p> <p>③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.</p>
--------	---

- ④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
- ⑤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**없다**.

정답 ②

- ① (X)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양등한 매매 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(대판 1963.9.12. 63다452).
- ② (O)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(대판 2005.6.9. 2005다6341 등).
- ③ (X) 채무자의 '책임 있는 사유'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(제546조).
- ④ (X)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(대결 1990.3.27. 89다카14110).
- ⑤ (X)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, 일방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이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(대판 2001.6.29. 2001다21441).

294. 해제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 <노무사 2008>

- ① 매매계약체결 후 목적물의 가격이 급등하여 약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게 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②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③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가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.
- ④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
- ⑤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**있다**.

정답 ⑤

- ① (X)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양등한 매매 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(대판 1963.9.12. 63다452).
- ② (X)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(대판 2005.6.9. 2005다6341 등).
- ③ (X) 채무자의 '책임 있는 사유'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(제546조).
- ④ (X)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(대결 1990.3.27. 89다카14110).
- ⑤ (O)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, 일방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이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(대판 2001.6.29. 2001다21441).

수정

p.312 344번 정답

기 존	정답 ④
수 정	정답 ①